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80,041,106	26,401,233
일반회계	828,784,058	24,863,522
특별회계	51,257,048	1,537,711
공기업특별회계	30,956,562	928,6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956,562	928,697
기타특별회계	20,300,486	609,01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58,960	253,7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125,478	213,764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9,860	23,99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81,500	32,4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97,758	44,933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550,000	16,500
주차장특별회계	485,530	14,566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301,400	9,0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